

## 제13장 경제협력

### 제13.1조 기본원칙

1.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.
2.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협력을 수행하며,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.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,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협력할 것이다.
3.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,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존중하고 장려한다.
4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.

### 제13.2조 협력 분야

1.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.
2. 산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  - 가. 자동차
  - 나. 철강 및 금속
  - 다. 석유화학제품
  - 라. 전자제품
  - 마. 기계
  - 바. 의류, 섬유 및 신발
  - 사. 유통 및 물류, 그리고
  - 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
3. 농업,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축산 및 작물 생산
  - 나. 원예
  - 다.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
  - 라.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
  - 마. 수산 자원 관리
  - 바. 산림 관리
  - 사.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, 그리고
  - 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
4.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- 가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
  - 나. 통관절차
  - 다.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
  - 라. 지식재산, 그리고
  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
5. 그 밖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- 가. 중소기업 지원 정책
  - 나. 통계
  - 다. 공정 경쟁
  - 라. 사회기반시설
  - 마. 투자
  - 바. 문화 관련 서비스, 그리고
  - 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

### 제13.3조 협력 형태

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기술 지원
- 나. 인적자원 훈련
- 다. 의견 및 정보 교환
- 라. 전문가 교류
- 마. 세미나 및 워크샵
- 바. 제도의 설계 및 개선
- 사.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
- 아. 발전전략 수립
- 자. 모범사례 공유
- 차. 기초연구
- 카. 공동연구 및 개발
- 타.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
- 파. 모델 및 기술 이전, 그리고
- 하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

### 제13.4조 이행

1. 협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.
2.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, 경제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가 설립된다. 양 당사국은 위원회의 형태 및 기능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.
3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기간에 협력사업을 수행한다. 그러한 사업의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.

4.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,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.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약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.

### 제13.5조 경제협력 자원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3.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.

## 부속서 13-가

### 문화 관련 서비스 협력

1.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이해 증진 및 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시청각, 관광, 엔터테인먼트(극장,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한다), 문화유산,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2. 관련 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, 협력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, 표준 기술과 관련 법 및 규정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서도 촉진된다.